

제2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1. 1. 7(금), 16: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1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김관균, 박상호, 박정웅, 박철균, 오동석, 이재호, 이해진, 임원형, 조중열 평의원(이상 11명)
- 불참 평의원 : 김용호, 박윤규 평의원(이상 2명)

4. 회의안건

가. 의안(자문 및 논의)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성원보고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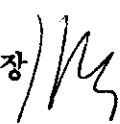
간사 김근태 : 총 13분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은 11분입니다. 당초 박윤규 평의원께서 참석하시기로 했었으나 지방에서 올라오시기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용호 평의원은 취업이 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간사님의 성원보고에 따라서 제27차 평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회의인데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임재수 평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셔서 의료원 박정웅 총무팀장께서 평의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평의원 박정웅 : 안녕하십니까, 전임 임재수 평의원을 대신해서, 의료원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됐고 인사복지팀에 근무하다가 4월 1일자로 총무팀에 발령받아서 총무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평의위원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무 : 오늘 회의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칙 개정(안), 개방이사추천

< 간서명 란 >

의 장 / 

위원회구성건, 보고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사님께 물어보죠. ‘학내 부서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 요청’ 과 관련해서 총무처나 기획처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간사 김근태 :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왜 안 가져왔죠?

간사 김근태 : 이것은 관련부서가 경리팀인데 일체 응답이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외부 인사가 오시거나 하는 것이 없으니까 순서상에 있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먼저 회의해야 하는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시면 학칙개정(안)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해주시죠.

간사 김근태 : 회의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학칙개정 건수는 총 8건이 됩니다. 먼저 특수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신설, 지난 회차에서 보류되었던 고등교육법 제 11조 개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과 기존의 등록금협의회전, 지원기관으로 교직부 신설, 연구기관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신설, 특수대학원 ITS대학원에서 교통공학과와 교통안전 전공 신설 요청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대학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과대학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의 공학인증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학칙의 관련조항 표기 삭제 건, 특수대학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허용 건 제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구에서 특수대학원에 임상치의학대학원 신설건이 있고, 연구기관에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신설, 지원기관에 교직부 신설이 있습니다. 별표1 13페이지에 보시면 특수대학원 란에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신설한 게 있고, 연구기관에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추가, 지원기관에 교직부를 신설한 게 있습니다. 이 3개 각각에 대한 증빙자료가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한 자료에 있습니다. 간략히 기구신설 3개에 대해서 요약말씀을 드리면 임상치의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 신설하는 것으로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신설에 대한 계획서 내용이 있습니다. 20명 정원으로 시작하고, 석사학위과정이며 신설 설치학과는 4개 학과,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2년 6개월, 주 교육대상은 치과의사, 전공의, 개원의사가 되겠습니다. 신설의 필요성은 3페이지에 보시면 치의학석사학위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치과 전공의 시험이 TO제로 바뀌면서, 그 대안으로 치의학석사학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경기도내 3천명 이상의 치과 의사가 활동하고 있고,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4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려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한림대, 이상 4개 대학 정도만이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설치하고 있어서 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본교 의료원 치의학교실에 전임교원을 8명 확보하고 있어서 신설에 필요한 요건이라든지 수요자 등을 봤을 때 타당성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특수대학원 정원 내에서 상호 조정하여 20명을 확보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임상치의학대학원 신설의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정원 확보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사 김근태 : 9개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내에서 상호 입학충원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조정을 통해서 20명을 마련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증빙자료가 프로세스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처음 발의한 것, 18페이지가 특수대학원 위원회에서 회의하여 결정한 결과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36페이지 제9차 교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정원확보 때문에 특수대학원간의 의견 차이는 없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없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회의록 자료를 보니 ‘김동윤 위원이 신설에 반대는 하지 않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간사 김근태 : 이것은 의료원하고 학교하고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교가 의료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의료원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보건대학원이라든지 임상치의학대학원, 이런 식으로 의료원 관련 의대 관련 야간대학원이 신설되면서 정원이 계속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 한 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20명 조정된 각 특수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내용을 보면 공공정책대학원에서 5명, 경영대학원에서 5명, 법무대학원에서 10명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해당 대학원들에서 입학정원의 100%를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특수대학원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정원확보 문제인데, 회의록을 보니 공공정책대학원에서 5명, 경영대학원에서 5명, 법무대학원에서 10명 정원 주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군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박철균 : 이 교무회의가 10월에 있었죠? 특수대학원위원회가 8월에 있었고, 지금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 모집하는 것인데, 이미 모집이 되었죠?

간사 김근태 :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학칙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간사 김근태 : 행정절차상에 교무회의 심의를 10월에 거치고 그 동안에 왜 지난 회차때 평의원회에 올라오지 못했나하면 직제 신설은 정관 소관, 법인 소관사항이라서 법인에서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열려 직제신설이 정관에 반영이 되고 교무회의를 통과 한 학칙이 효력을 얻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정관에 이미 반영 되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정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학칙신설이 올라온 것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관이 상위규정인데, 정관에 명시됐다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하든, 학칙에 명시를 하든 안하든 이미 내용상으로 이미 신설이 된 거죠. 학칙에 대해서 가안이 만들어지고 가안에 대해서 법인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가안을 만들었는데 교무회의를 통과 했는데 법인이 No 하면 가안이 효력을 발생 못시키는 거죠.

간사 김근태 : 조직 신설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 조직신설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안 되면 어떤 것도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칙도 사실은 저희들이 올릴 때 처음에는 신설(안)을 올립니다, 학칙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신설(안)을 올려서 결정 되면 법인으로 넘기고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에서 정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설(안)이 확정 이 되면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조직 신설은 상당히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경우에 학칙변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후속조치라는 말씀이시죠?

간사 김근태 : 네. 학사적인 조직은 큰 무리 없이 타당성만 있으면 진행되는데, 나머지 일반 조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무 :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학칙개정은 단위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겠다고 해서 공문들을 배포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칙 관련 개정해서는 시일이 촉박하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

< 간서명 란 >

의 장



겠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평의원회 지적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잘 조절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기획팀 소관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하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이 안전에 한해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전원 동의) 첫 번째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설명해주시죠.

간사 김근태 :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 11조 개정에 따라 지난 회차에 올라왔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등록금협의회가 삭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지난 번에 보류했던 건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지난 12월 초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작년 12월 2일에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칙 개정은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전면 개정이 2010년 12월 2일에 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것은 지난 번 간사가 얘기했던 대로 지난 번 평의원회 때 부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의결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학생의원들이 관심이 있을 테인데. 부령에 관련해서, 또 우리 규정에 보니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시행령 내용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간사 김근태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따로 둔다고 해서, 규칙인데 오늘은 학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칙에 대한 것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의장 박영무 : 규칙의 내용을 봐서 부적절 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운영 규칙 내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규칙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평의원회에서 학칙을 심의 의결한다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학칙에 관련된 중요한 학교 규칙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학칙에 많은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규칙은 아무렇게나 되었던 논하지 않고 학칙만 심의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학칙을 따진다

< 간서명 란 >

의 장



는 것은 학칙에 걸려있는 규칙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학칙과 규칙의 관계, 그것을 악용하거나 해석을 달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평의원 이재호 : 이런 운영규칙은 어디서 심의의결합니까?

간사 김근태 : 교무회의에서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몇 차 교무회의에서 이 운영규칙을 심의했습니까?

간사 김근태 : 그것은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보면 8차 교무회의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한 학칙 변경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규칙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이후에 운영규칙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는 건데.

평의원 임원형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3차 교무회의, 12월 21일에 심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학생하고 학교와 등록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무회의록에 운영규칙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네요.

간사 김근태 : 조금 기다리시면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칙조항을 보면 제16조의 2항은 정확하게 고등교육법 제11조를 그대로 갖다 쓰고 맨 끝에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학칙에는 고등교육법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뭔가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간사 김근태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물론입니다. 다른 것들도 상당 부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 없이 들어가 있나요? 여긴 지금 근거가 되는 상위법 내용을 빼고 쓰고 세부사항은 하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학칙을 심의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간사 김근태 : 학칙 대부분이 법령에서 정한 것들로 법령에 있는 것을 명기를 하고 하위로 옮겨놓는 규칙으로 따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학칙의 틀을 유지시킨 것이지 여기에 논의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일종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회가 학칙 심의한다고 할 때 세부사항을 통째로 운영규칙으로 위임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운

< 간서명 란 >

의 장 

영규칙까지 심의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혹시 법적인 체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의원 오동석 :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대로 학칙에 구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근거규정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규칙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규칙도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운영규칙이 제대로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심의가 안 되니까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래야 학칙을 심의한다는 본래의 뜻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의장 박영무 :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규칙은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심의할 게 별로 없지요 중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두었으니. 서울대학교를 봤더니 많은 규칙들이 평의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우리학교가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을 규칙으로 해놓고 다 빼버린 거죠. 일예로, 교원인사에 관한 내용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다 빠졌어요. 잘못된 거예요. 교원인사, 교직원 신상에 관한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규칙이라는 이유로 평의회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지요

간사 김근태 : 이렇게 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학교의 규정체계가 정관, 규정, 학칙 그리고 일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해왔던 학칙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학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쪽 해왔고, 다만 광의적으로 다른 규칙도 같이 학칙의 범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흐름으로 이어져 온 것이지 그런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도성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의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을 때 그 규칙이 평의원회 심의 사항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참고로 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칙과 규칙은 또 동격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오동석 평의원님의 법적인 견해도 그렇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위법 근거 한 줄 써놓고 아래 다른 규칙으로 위임한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그 부분만 국한해서 심의해야한다면 심의한다는 의미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운영규칙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박철균 : 당초 61조에 위치했었는데 16조 2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위원회 관련 쪽에 넣는 게 더 낫다고 봤나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발의부서인 예산팀에서 올릴 때 밑에 두기 보다는 위에 위원회 관련 쪽에 두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고려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지금 학칙 전문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15조나 14조에 무슨 위원회 관련된 조항들이 쪽 들어가 있습니까? 교무회의 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네, 위원회입니다. 제3장 교무회의, 교수회 및 위원회라고 해서 대학원위원회, 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 특수대학원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칙 자료를 가져올 때 까지 우선 3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3번은 지원기관에 교직부 신설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대학에 2급 정교사 양성하는 교직과정이 있습니다. 교직과정을 위해서 매년 주기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양성을 하는 대학으로 하여금 평가항목으로 교직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에 교직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교직부 신설의 계획서와 관련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학사및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관련사항들을 역시 검토확정하였고 증빙자료들이 4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012년에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대비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제가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직부가 신설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다 겸무 형식으로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도 현행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간사 김근태 : 특별하게 교직부라는 조직신설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교원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대학원이 있고 기초교육대학에는 교직전담 교수가 소속되어 있어, 기존의 교직이수과정을 기초교육대학에서 좀 더 체계화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조직만 개편하는 방식인가요? 예전에는 교무처에 있는 분이 계셨다면 이제는 기초교육대학에 소속되는 거라는 차이인가요?

간사 김근태 : 네, 기초교육대학 체제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주기적으로 양성기관을 평가하는데, 교직부가 설치되어 있느냐가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신설을 한 이유가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최근 우리나라 교원양성인력수급이 과도하게 되어 평가를 통해 교직과정 TO를 관리하기 위해서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관련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고 12차 교무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교과부 지침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 의견 없으시면 교직부 신설은 원안대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간사 김근태 :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 교통연구센터 신설인데요, 이는 작년 8월 선정된 ERC사업의 연구센터 설립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ERC 사업이 진행되는 일환으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5번 말씀해주시요.

간사 김근태 : 다음은 ITS대학원 학과 전공 설치가 되겠습니다. ITS대학원 교통공학과에 교통안전전공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원형 평의원 이석)

신구대비표 별표4의 14페이지 보시면 ITS대학원 교통공학과에 교통안전전공 신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80페이지부터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관균 평의원 이석)

의장 박영무 : 정원 문제는 없습니까?

간사 김근태 : 네, 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첨부된 서류들이 전부 위원회 회의록인데, 서명이 없는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앞에서 나온 자료들이 서명이 없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전자결재라서 그런 것이고 다 결재 된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ITS대학원 교통안전전공 신설은 정원 문제도 없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지요.

간사 김근태 : 다음은 약학대학이 신설되고 나서 관련 학사를 진행하기 위한 학칙 반영이 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임원형 평의원 참석)

신규대비표 8페이지 신입학부분에서 신입학 조건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약학대학 22조 5항 4호에 보면 약학대학은 학사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학사과정 42조 1항은 약학이라는 전공을 표기한 내용이 되고, 다음 페이지 43조 3항 약학부는 의학부나 간호학부와 마찬가지로 복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 46조 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에 대해서도 약학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의대 간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 전공과 달리 이수학점이라든지 요건들이 많이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조 학사경고 및 유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김관균 평의원 참석)

50조 학사과정 졸업요건에서도 172학점 취득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수료학년도에 필요한 학점이 각 학년마다 약학대학 43학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51조 학사과정의 조기졸업 항목에 약사학위과정은 제외하는 내용 등, 이상이 약학대학 학사관련 학칙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아까 교직부 신설 관련해서 여쭙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설계획서 뒤에 있는 교원양성위원회 회의록에 의해서 교직부가 신설되고 학칙이 바뀌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원양성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리학전공 교직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학칙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칙 개정을 안 하나요?

간사 김근태 :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여 바로 학칙개정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전공 교직과정 폐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6번 약학대학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죠.

간사 김근태 :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 공학인증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동석 평의원 이석)

15페이지를 보시면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의 경우에는 공학인증 중단을 하게 됨에

< 간서명 란 >

의 장



따라 공학인증 표기를 삭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 표기방법은 별표를 통해서 공학인증 여부를 구분하도록 해놨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참고자료 10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회의록 107페이지에 응용화학 해당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인 거죠?

간사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무 : 충분한 얘기는 됐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학생들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간사 김근태 : 그런 것은 교무팀에서 충분히 문제없게, 조금이라도 민원이나 학생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예방하고 조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록이 없어서. 기록이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들은 해당 학부장이나 학장이 와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간사 김근태 : 문제가 있었다면 공학인증하는 위원회도 있고 관련 센터도 있고 관련 학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 이의제기 되었다면 그에 관한 필요한 부분들이 논의되었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평의원 박철균 :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부칙2조에 보니까 기존 공학인증 받던 학생이 중단됨에 따라 경과 조치가 있고 회의록에 표시가 되어 있다.

(오동석 평의원 참석)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 학생들이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회의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의장 박영무 : 주동표 평의원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공학인증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진학했는데 이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을까요. 여기서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뭐라고 얘길 할 수 없는 것이 공학인증을 채택하고 현재 재학생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입학하고 실제로 해 왔을 텐데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다 변경을 하면서 공학인증은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하겠다. 지금 2010학번까지 들어왔는데 2009, 2010학번 학생은 공학인증을 하는 걸로 알고 들

< 간서명 란 >

의 장



어왔는데 전공에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는 제도를 바꾸면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어떤 일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장 박영무 : 물론 해당전공에서 다 생각을 했을 것이긴 한데 우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니까, 만약 갈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겁니다.

간사 김근태 : 사실 학부 전공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논의의 시작은 해당 전공에서 심각하게 논의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학부 대학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공학인증 위원회도 있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사운영및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무회의 등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교수들의 입장은 쉽게 정리되는데 학생들 입장은 학생들 입장을 물어 봐서 해야 합니다. 학생들 입장은 이해가 갈리게 됩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자공학부 PD를 맡고 있어서 공학인증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2학년을 마치고 나면 공학인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에 학생이 임의로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90%이상 학생들이 포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 중 굉장히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문언을 고치시면서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3쪽에 보면 원래처럼 변경학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른 쪽에 보면 기존 학생들의 이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11쪽에 있는 단서조항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라든지 학생이 주어가 되어서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학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앞에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만 바꾸니까 이상해 진거죠. 학교가 적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려면 적용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학생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문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113쪽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평의원 임원형 :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된 건가요?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근태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90%이상의 학생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공학인증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말은 공학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까?

간사 김근태 : 다른 개념이죠.

(이해진 평의원 퇴장)

평의원 이재호 : 90%가 포기한다고 해도 나머지 10%가 문제인 거군요.

평의원 조중열 :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했거든요.

(임원형 평의원 이석)

실질적으로 학생이 원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려대 전자공학전공도 작년에 공학인증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공학인증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서울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 규정대로 하면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2009학번부터는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평의원 박철균 : 규정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학생은 자기가 들어올 시점의 학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공학인증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학생이 원하면 항상 공학인증을 줘야 되죠. 우리가 규정을 그 뒤에 어떻게 만들든지 공학인증을 안주면 학생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학교가 지게 되어 있는 건데, 경과조치에 의해서 공학인증을 안 준다고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명이라도 공학인증 받겠다고 하면 제도상 줘야 한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학인증도 우리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에서 탈락하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심사에서 탈락하겠군요.

간사 김근태 : 그렇죠. 중단을 하면 그걸로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주동표 : 입학생들은 원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보장이 될 것인

< 간서명 란 >

의 장



지가 문제네요.

의장 박영무 : 평의회에서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멘트를 해서 기존에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라고 남겨 놓고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대다수를 생각하면 다 포기하는 건데 몇 사람을 생각하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 이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코멘트로 남겨놓고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이런 경우 학교가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모든 학생의 서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런 컨디션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원안대로 하죠. 8번째로 넘어가죠.

간사 김근태 : 8번째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학부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대학원에도 그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의로서 경영대학원에서 요청이 시작되어 특수대학원위원회를 거쳐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칙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일반대학원 석사를 부전공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간사 김근태 : 안됩니다.

평의원 조중열 : 예를 들어서 산업대학원으로 입학해서 일반대학원 부전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간사 김근태 : 안됩니다. 특수대학원 내에서 복수전공, 부전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명기를 하고 경영대학원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평의원 조중열 : 일반대학원하고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간사 김근태 :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야간에 산업대학원 학생들이 많은데 숙원사업이 일반대학원하고 차이점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산업대학원에서 '산업' 이라는 글자를 없애주면 제일 좋겠다는 거죠.

간사 김근태 : 특수대학원 명칭에 대한 부분은 별도 사안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자기가 회사에서 산업대학원 석사 받았다고 하면 큰 반향이 없는데

< 간서명 란 >

의 장 

그래도 일반대학원 석사 받았다고 하면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간사 김근태 : 이수학점 자체부터도 많이 다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조항을 보면 조금 확인해야할 것이 산업대학원 학생이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복수전공을 할 수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없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그럼 이 조항이 당해 특수대학원 내에서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특수대학원에서 복수전공, 부전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각 특수대학원 운영규칙에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평의원 박철균 : 예를 들면 산업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보통신대학원에서 하는 걸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간사 김근태 : 아니죠. 복수전공 자체가 복수전공이라는 게 그 쪽 대학원에 들어가야 그쪽 전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입학 자체가 다르니까요. 다만 교육과정 공유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이해는 되는데 하위 규정에서 못 어기게 막아줘야 되는 거죠.

평의원 조중열 : 산업대학원 학생들이 이것 들고 와서 일반대학원 복수전공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평의원 이재호 :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있으니까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해당대학원 내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글자만 집어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일반대학원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당 대학원내에서 하는 게 없어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1항에 보면 일반대학원은 부전공을 할 수 있다는 게 명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우리 직제가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 특수대학원입니다. 산업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특수대학원입니다. 일반대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면 9개 특수대학원에서 다 복수전공 부전공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각 특수대학원’ 이라든지 ‘해당’ 을 넣든지 해줘야죠.

(임원형 평의원 이석)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조중열 : 특수대학원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록금 내는 것에 비해서 찾아가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복수전공, 부전공이라는 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간사 김근태 : 그렇죠.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공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통적으로 연결된 과목이 많아서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특수대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은 특수대학원은 아예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특수대학원 운영규칙에 명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의원 조중열 :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특수대학원도 9개가 있어서 왔다 갔다 전공할 수 있으면 몰라도.

간사 김근태 : 특수대학원 각각의 학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학칙을 보는 경우는 잘 없고, 자기들 학사운영규칙을 제일 우선시해서 보거든요. 학칙까지 올라오는 것은 행정라인 또는 규칙제정의 판별을 할 때 올라오게 됩니다.

평의원 박정용 :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학칙에서 큰 틀에서 규칙에서 정한다고 했고 거기서 특수대학원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의장 박영무 : 가안에 보면 경영대학원에서 발의한 학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안에서는 학사운영규칙 개정안이 나와 있네요. 가안과 나안이 동시에 연구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별도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군요. 가안 경영대학원에서 학칙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할 때 이런 이런 것을 발의를 할 테니까 운영규칙 안을 각 대학원에서 개정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별도 안으로 하고 통과시켰는지 궁금하네요.

(임원형 평의원 참석)

간사 김근태 : 이게 뭐냐 하면 하도 복잡해서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보면 이 안은 다른 대학원에서 발의 한 것이 아니라 경영대학원에서 발의해서 올라왔고 밑에 있는 나안은 대학원생 논문의 진실성, 논문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교과부 지침이 내려와서 모두 학사운영규칙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추후에 운영규칙이 한 번 정비가 되어야 겠군요. 그렇게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운영규칙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야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러면 2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일부는 조건을 붙여서 통과한 것으로 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왔습니까?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자료 배포)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봐서는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실테니 학생의원인 임원형 평의원께서 작년에 등록금협의회를 경험해보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평의원 임원형 : 제가 알기로 회칙이나 규칙은 상세해질수록 명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등록금운영규칙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많은 학생대표자들이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신인 등록금협의회에서도 어떻게 의결할 것이고 어떤 자료를 줄 것이며 그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이며 며칠 동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항상 치열하게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갈등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잘 정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칙을 보면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2차 열렸고 3차는 오늘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직 학칙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왜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학생대표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학생들과 협의를 했는지 어떤 절차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사 김근태 : 기획팀에 규칙이 올라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디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등록금 관련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등록금심의회에 대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어느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창구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스러우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칙은 항상 필요할 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불만스러운 부분들의 개정은 언제든 열려져있다고 보며 그리고 학칙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왜 이게 가동이 되었느냐 하는데, 이번 건의 학칙 반영은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학교 내부사정에 의해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개정이 안 되었을 때 상위법령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그 법령을 벗어나

< 간서명 란 >

의 장 

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상위법을 지켜야한다고 보면 가동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평의원 임원형 : 개정 절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등록금 심의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박영무 : 논의를 좀 간단히 해보죠. 과거에 등록금협의회가 있었죠, 그것하고 비교해서 개선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이 마련된 건데 나아졌으면 바람직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간사 김근태 : 법 개정은 진화해서 개정됐죠.


의장 박영무 : 학생위원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등록금 협의에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평의원 임원형 : 분명히 상위법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협의회에서는 동수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동수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동수로 구성되어도 합의가 안 되면 교무회의로 넘어가서 교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학생 구성원 수가 줄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재단인사까지 포함해서 교직원 3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재단인사가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또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동문으로 된 것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동문으로 하자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학교에서 여전히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도 어떤 것을 심의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예산이라는 것은 학교의 큰 부분이고 많은 부분이고,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금협의회 때보다 확실히 위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등록금협의회 할 때는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총학실에서 교내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간사 김근태 : 그것은 운영하면서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칙 어디에도 없지요.

평의원 임원형 : 실질적인 운영이 그렇게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획처장실에서 밤새도록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의날 당시에

< 간서명 란 >

의 장 

만 보고 자료를 모두 회수해 갑니다. 실질적으로 자료 심의가 어려운 거죠. 제가 경험해본 것으로는 결코 학생들이 등록금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 그 날, 제가 알기로는 심의안전 결과를 내야한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대학평의회 때 학교 예산을 자문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교무회의가 있어야겠죠. 그 전에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간사 김근태 : 다음 대학평의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안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 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빠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은 교직원 3명, 학생 2명, 전문가 1명, 동문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게 빠져있어서 이런 규칙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련 전문가는 누가 선정할지, 동문은 누가 선정할지, 학생은 누가 선정할지 나와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원본이 맞나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획처장이 다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 버전인가요?

평의원 조중열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우리가 규정이 없을 때도 비슷하게 돌아갔던 말입니다. 평의회에서 이 규정을 받아 들이나 아니나 대세에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문제점이 제기되면 학칙 변경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평의원 오동석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벌써 운영되고 있는 거죠?

간사 김근태 : 학칙 범주에 들어가느냐 문제는 차치하고 현재 운영규칙이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절차를 제안한다면 평의회에서 운영규칙을 살펴보니 이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게 어떨까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라는 게 확정되고 나면 영구불변이 아니니까요.


평의원 임원형 : 영구불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금협의회 규칙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수년간 문제제기했음에도 영구불변했거든요.

간사 김근태 : 등록금협의회 운영규칙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있었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31쪽 교육과학기술부령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 간서명 란 >

의 장 

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학칙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학칙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을 7명으로 확정하는 것이라든지 이 7명을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교과부령에 있으니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학칙에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학칙에 근거조항만 두고 운영규칙에 통째로 넘겨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간사 김근태 : 상위법에 몇 명이상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칙에 다시 옮겨야 할까요.

평의원 오동석 :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정을 지어야죠. 구성의 문제니까 학칙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관행이 학칙에는 근거를 추상적으로 두고 구체적인 것은 운영규칙에 둔다고 하면 이게 학칙이 아니니까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려고 하면 이걸 학칙에 넣던지 아니면 기존의 관행에 따르려고 한다면 규칙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기획처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나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면 호선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의원 이재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규칙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박철균 평의원 이석)

의장 박영무 : 다른 학칙을 심의할 때처럼 갈등 요소가 있고 충분히 해명이 안 되면 결정을 유보합니다.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규칙의 내용에 시비 거리가 많으니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죠.

간사 김근태 : 그런데 학칙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되고 난 이후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말씀하신대로 보류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칙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모두 비취서 움직여졌는데, 우리학교 학칙이라고 딱 정해져있는데 필요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아닐 때는 그 단어에 충실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일관되게 가자는 거죠. 학칙으로 볼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볼 건지. 전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려면 일관되게 입장을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조 7항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여기 규정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으니 학칙에 명기해야 할 텐데, 우리 학교가 학칙이라는 것을 규칙과 구별하여 협의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학칙에다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것을 넣어야죠. 그게 아닌걸 봐서는 학칙이라는 것에 규칙까지 포함해서 광의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학칙이라는 대상에는 그런 규칙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박철균 평의원 참석)

평의원 오동석 :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평의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칙에는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일관되게 입장을 다루고 논의해야 합니다.

의장 박영무 :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학교에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평의원회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의사 결정인데, 교직원들의 신분, 신상에 관한 규칙들이 그러합니다. 그에 관한 한 평의회가 유명무실해지지요. 등록금 문제도 학교 운영의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이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건이 아닌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대학평의원회가 규칙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교육부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학칙을 협의로 인정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학칙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학칙을 광의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운영규칙의 내용도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운영규칙 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논란이 있는 조항은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안 등록금심 의위원회는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 포함해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이것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칙이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가서 심의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학칙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등록금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 간서명 란 >

의 장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굉장히 절차적으로 오류가 많고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는 학내 구성원들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건인데 간단히 안건 설명해주시죠.

간사 김근태 : 잠깐 고등교육법 11조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의장 박영무 : 부결된 겁니다.

간사 김근태 :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부결입니까?

의장 박영무 :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이 전하고 관련해서 지금 교과부의 령에 나와 있는 학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칙을 협의로 해석한다면 지금 학칙개정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교육부령에 나와 있는 학칙을 규칙까지 광의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내주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도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해보면 당연히 들어 가야하는 규칙의 구성요소가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규칙으로 인정하기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인정할 수 없지 않나 합니다. 어느 경우로 해석하든 간에 지금 학칙개정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주동표 평의원 참석)

의장 박영무 :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형식이든지간에 학교와 학생간의 등록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학칙 마련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협의가 미진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까지 했던 협의회가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등록금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사 김근태 :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성의 문제, 이런 규칙으로서의 문제, 이것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옛날 걸로 돌아가서 등록금협의회 그것은 교과부령이나 고등교육법 개정된 규칙이 심의위원회로 해라는 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시기적인 것,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필수요소가 빠졌다 이

< 간서명 란 >

의 장 

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보다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옛날로 돌아가서 등록금 협의회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상황 조건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김관균 평의원 이석)

평의원 임원형 : 협의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취지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자는 게 평의원회 의견인 것 같습니다. 등록금심 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규정류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12월14일 자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관균 평의원 참석)

이재호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자문이 완료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평의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때 학생들과 잘 협의를 해서 분란이 없게끔 해야지만 평의원회에서 잘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본 모든 학생대표, 30대 중앙위원회 모든 학생 대표자들은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더 좋다면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실질적인 운영도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논의하실 것 같으면 17쪽을 보시면 사립 학교법 4항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에 정한다고 되어 있고 18쪽에 보시면 정관에서 적어도 2인,1인,2인이고 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령하고 학칙하고 운영규칙이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운영규칙이나 학칙의 규정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잘 알 텐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을까요?

평의원 이재호 :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간사 김근태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팀으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설날이 끼어있어서 예산의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1월 21일을 포함해서 1월 말경 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자문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개최일정에 대한 양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오동석 평의원님께 여쭙 봐야겠네요. 등록금협회가 과거에 있었고 학칙 개정이 안 되면 과거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오동석 : 상위법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과거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법령을 무력화 시킬 방법도 없고, 학교 측이 부적절한 규칙을 제시하여 계속 논의만 하게 만들면, 등록금 협의는 자동적으로 무산되겠군요?


평의원 이재호 : 여담수준이지만 정부에서 각 대학 총장들을 불러다가 등록금 동결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죠, 물가안정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등록금협의회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년 생각을 하더라도 기왕에 규칙을 만들 바에는 체계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이 문제는 이걸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간사 김근태 : 다음 안건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전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개방이사 위원들이 총 4분이 있습니다. 이사 3분, 감사 1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성훈 서강대 교수인 개방감사의 임기가 2011년 3월 3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구성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방감사추천은 2배수를 하게 되고, 사립학교법 제 14조에 근거해서 2배수를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추천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대상자에 대한 선임을 위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요청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그와 관련해서 법인이나 대학교, 전문대학 평의원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게 되고 그 추천을 이사장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서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의장에게 위원추천을 요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청을 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배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진행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법인에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위원회 구성요청이 왔고, 12월 1일에 대학평의원회 의장 명의로 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시정 의견 공문을 법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런 요청과 답변이 작년 12월 9일까지 주고 받은 공문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17페이지 이하 나와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전성훈 감사의 임기만료가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추천 의뢰하는 11월 25일 자 공문을 받고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에 추천위를 구성을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처럼 법인 산하에 2개 이상의 대


< 간서명 란 >

의 장 

학이 있을 경우 두 대학이 협의하여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이 없이 재단은 정관으로 추천위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의 문제점 시정에 관한 의견이 22페이지 공문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23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다시 24페이지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지난번에 관련해서 이재호 의원 활동 했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하고 관련해서 평의회하고 관련된 것은 과거 대학평의회 회의록을 참조했습니다. 제1차 회의록부터 보면 이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1차 평의회 회의록을 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5인중 아주대학교에서 2인 전문대학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아주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규모 및 인원 등을 비교할 때 불합리한 배분임에 의견이 일치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차 평의회 회의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불합리성, 특히 인원이나 규모의 차원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지적되었다시피 둘 이상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에서 협의해서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에 의뢰하기 전에 이미 정관에 추천위원을 아주대학교 2명, 자동차대학 1명, 재단추천 2명으로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법시행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차 평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2차 평의회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냐 하면 개방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추천이 안 되면 그때는 감독관청에서 지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표는 선임을 해놓자고 했습니다. 협의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3차 평의회 회의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 협의를 했던 분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재단하교의 협의에 있어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것은 확인했고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태로 우선 시한 때문에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교정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우리대학 평의회하고

< 간서명 란 >

의 장 

자동차대학 평의원회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사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협의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의장 박영무 : 금방 이재호 의원 말씀했듯이 법인 산하에 2이상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양 대학의 평의원회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정관에서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얼핏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대학이 인원, 교수인원수, 예산을 고려하면, 참고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대학의 교수수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계공학과 수준입니다. 그 자동차대학에서 실질적으로 1명이 오게 되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곡되었고요. 충분히 이 구성자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구성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제가 지난 번에 재단 측에 보낸 의견입니다. 여기에 재단이 답변이 오기를 그런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의원회 회의록 하고 해서 추천위원회에서도 내부에서도 그런 내부 논란이 있고 시한의 문제가 있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안 남겨줬다는 이유로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점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회의록이 없었나 보죠?

평의원 이재호 : 회의록에 그런 내용을 남겨두지 않았고, 추천 과정, 어떤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어떻게 추천하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신중하게 형평성이 보장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대학 평의원회 의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대학 평의원회 의장님께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충분히 의견 나누지는 못했고 전화로만 의견을 교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 개방이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기 만료가 3월 3일이면 규정상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간사 김근태 : 거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받은 의장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장이 후보자 2배수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관할청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2페이

< 간서명 란 >

의 장



지 보면 작년 11월 25일 12월 9일까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제외한다 치더라도 10일은 초과된 상태입니다. 임기만료 전에 완료가 되려면 10일이 초과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한테 이사장이 요청을 하고 30일 이내이니 까, 2월 말까지는 크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일은 초과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통보하게 되면 그로부터 30일, 이사장께서 즉 각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빨라도 2월 중순 이내에 규정상으로 보면 해야 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규정상에 보면 임기 만료 전 3개월 전이네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안을 내보면 지금 1,2차 아주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을 살펴 보더라도 그렇고 사립학교법시행령과 우리 정관하고를 살펴봐도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는 분명하게 2이상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정관에서 아주대학 추천위원 2명, 전문대학 추 천위원 1명, 법인 추천위원 2명,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개방감사 1명 추천 관련해서 재단하고 평의원회 의견이 배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한정 지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감독관청에서 감사를 정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마치 3년 전하고 같은 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정관에 의 거해서 진행하되, 동시에 우리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 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만약 관리감독관청에서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에도 시간에 쫓겨서 그냥 진행했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평의원 이재호 : 심각한 문제라기보다 다소 수치스러운 거겠죠.

평의원 조중열 :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 가봤자 관할청 감사인 거죠. 관선감사 한 명 나오는 것은 학교에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평의원 오동석 : 아니면 전문대학에도 평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합동 으로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구성은 양대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 에 미리 정해 놓아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구성자체를 협의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

< 간서명 란 >

의 장 

주대학교 교수가 600여명이 되고, 아주자동차대학에는 교수가 26명입니다. 구성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없이 추천위원 구성비를 정관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것이죠.

평의원 오동석 : 지난번에도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나요?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협의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었나요.

평의원 이재호 : 지난번에는 아주자동차대학과 협의는 없었고 계속 재단하고 협의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주자동차대학과 밀씀들 나누는데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의장 박영무 : 이재호 의원 의견대로 정관에 미리 정해놓은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적인 타당성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과부에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받고 타당하다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재호 의원께서는 부족하나마 감사 한 분은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고, 조중열 평의원께서는 교과부에서 지정한 감사를 받자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평의원 박정용 :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갈등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문제인데 아주대학교 자체가 이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위상이 있는 대학인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평의원회와 재단이 협의하면서 쪽 보면 재단하고 각을 세워서 이 평의원회에서 논의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저한테 또 평의원회 의원을 하라고 하면 정중하게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논리에서 많은 것들이 묻혀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선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여쭙본 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 회의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의 수치다, 이 상황논리에서 우리가 정해진 내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 하나 딱 부러지게 결론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럴 바에야 정해져 있는 순서에 대해서 안 되면 규정에 맞게 하도록 강한 다른 액션도 평의원회에서 한 번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다른 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표결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박철균 : 현재 정관이 법 취지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를 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도 현재 정관을 가지고 이 건을 처리하고 정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석을 받아보면 정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 다음 것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먼저 시정하고 하자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정관이 법 취지에 타당한지 아닌지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현재 정관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개방이사 추천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조중열 : 아주대학교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는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관선이사도 엄연히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것과 국가에서 관선이사 임용하는 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보내는 감사도 잘 관리하라고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잘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의원 임원형 : 관선감사는 어디서 파견하는 건가요?

평의원 조중열 : 교과부입니다.

평의원 임원형 : 지금 감사님이 저번에 펀드문제 했을 때 이사회에서 감사 답변하셨던 그 분이 바뀌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아니요. 감사가 2분이고 지금 이 분은 개방감사죠.

평의원 임원형 : 지금 여기서 어떤 길 결정해야 하나요?


평의원 이재호 : 결국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의장 박영무 : 오늘은 결정해야합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추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던지 아니면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일단 추천을 하든지 두 가지 중 결정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추천을 안했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재단에서 2명, 자동차대학 1명, 3명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적법한가, 만약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 생각에 개방감사는 이사회 전체 중에서 1명이니까 그렇게 중요

< 간서명 란 >

의 장 

한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입을 만한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정)

의장 박영무 :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일단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시정해주시오 라고 교육부에 공문 발송하는 것은 일단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추천할지 아니면 추천하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사회에 새로운 사람을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의장 박영무 : 추천하지 말고 관선감사를 받자는 말씀입니까?

평의원 조중열 : 네.

의장 박영무 : 김관균 평의원은 관선감사를 받자는 의견이십니까?

평의원 김관균 : 네.

의장 박영무 : 감사 선임 절차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규정들이 안 나와 있어서, 만약 우리가 추천을 안 하게 되면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인사만으로 선임 할 수가 있는 건지요?

평의원 오동석 :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평의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1명밖에 안되니까 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간사 김근태 : 규정에 보시면 사립학교법 14조 5항에 보면, 17쪽에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할 때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이것은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에서 추천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전 아예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평의원 이재호 : 지금 근데 평의원회를 만들지 않고 혹은 개방이사 추천을 안 하고 그런 사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과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평의원 오동석 : 관할청이 추천을 안 하고 이사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명백히 법에 위반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에 대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세세하게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의원 이재호 : 개방감사 1명이니까요?

평의원 조중열 : 네.

평의원 김관균 : 추천을 안 했을 때 관할관청에서 추천해서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이 되어서 감사가 추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또 평의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거기까지 안 갈 가능성도 많이 있겠지요.

의장 박영무 :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 정관에 따라서 공정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할청의 개방감사 추천을 감수하겠다, 어떻게 표결해야 할까요, 2개를 놓고 동시에 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할까요? 잘못된 정관에 것에 대해서 교과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로는 이미 결정이 되었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느냐 마느냐만 표결합니다. 현 정관에 의거해서 추천하는 게 좋겠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박정웅, 박상호, 박철균 평의원(이상 3명)

그럼 현 정관으로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 조중열, 주동표, 박영무, 김관균 이재호, 오동석 평의원(이상 6명)

- 기권 : 임원형 평의원(이상 1명)

평의원 이재호 : 이게 과반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정원의 과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재적위원의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 오동석 : 그렇다고 추천안하는 쪽이 과반을 안 넘는다고 해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사 김근태 : 재적의원 과반수네요. 정관에 있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사 김근태 : 읽어드려야겠네요. 대학평의원회 의사는 의원정수, 대학평의원회 개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대학평의원회 의사는 의원정수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13명인가요? 그럼 7명이 되어야 하는군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저 것도 못한다는 건가요?

평의원 오동석 : 첫 번째 안전에서 부결되는 순간 추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뒤에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니까요.

평의원 이재호 : 추천한다는 것이 부결된 것이니까요.

평의원 오동석 : 추천하는 행위 자체가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이니까요. 안하는 것을 부결로 봐서 다시 하는 걸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평의원 임원형 : 그러면 대학평의원회 회칙은 의결까지도 정관에 나와 있는 거네요.

평의원 박철균 : 원래는 안전이 올라온 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이 의무조항이라서 올라온 거죠. 안전이 올라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 의견이 6표가 나온 거죠.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하지 않는 쪽으로 6표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추천하지 말자는 안 자체가 부결된 거죠?

평의원 오동석 :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평의원 박철균 : 그렇죠. 규정을 우리가 이리이러해서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평의원 박정용 : 가부가 확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의견 자체가 심의에서 부결된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네, 지금 안전이 추천위원회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사 김근태 : 안전 자체가 부결됐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안전은 추천 건이니까요.

의장 박영무 :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우리에게 추천위원 추천의뢰를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정관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므로 교과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관상의 잘못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의뢰한 안전에 대해서 추천을 하자는 안을 상정했을 때 3명이 찬성을 하고 6명 반대, 1명 기권이기 때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구성(안)은 부결된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총장선임(안) 및 전체 교수 투표 결과입니다. 교수 위원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다른 평의원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평의원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재단에서 8월에 14대 총장선임 초안을 마련해서 학교 내 각 단체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참고로 당시 재단 안

< 간서명 란 >

의 장



은 심사위원회 안이었습니다. 후보로 지원한 분들 전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총장을 선임하겠다는 안이었는데, 교수회는 그 안이 그 전에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 및 병원 노조의 합의안에 비춰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합의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 이견을 전달한 바 있고, 그 중간에는 재단과 교수회가 나서서 양쪽이 조율하는 그런 단계를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그동안의 이런저런 앙금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총동문회장이 중간에 중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간접적인 형태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최소한에 해당하는 의견접근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천위원회로 가되 재단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된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외 다른 문제에 있어 이견을 어떻게 좁힐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추천위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양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재단에 맡겨달라는 입장이었고 교수회는 나머지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함을 보일 테니까 집중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결국은 좁히지 못했고 재단이 최종적으로 공고를 냈고, 공고에 의해 4명의 후보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추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수회가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투표에 참여한 교수의 70% 이상이 현재의 재단(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이라도 재단과 교수회가 합의안을 마련해서 2011년 2월까지 차기 총장을 선임해라 라는 안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 후에 교수회는 다시 재단과 대화시도를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수회가 재단안 대로 가되, 단 한 가지 추천위원회가 추천 후보자를 결정 하는데 있어 1차적으로 각 후보자에 대해서 추천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대상에 한해서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했지만 재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교수들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재단 이사장 명의의 공고가 나와서 추천위원회를 포기하겠다는, 지금 지원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그냥 이사회에서 심사해서 14대 총장을 선임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월 4일 교수회 대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수회에서 제안한 상기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추천위원회

< 간서명 란 >

의 장



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자 이렇게 강하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전망으로는 재단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무 :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회 안에는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되 추천위원들 1인 1표제 투표로 대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추천위원회를 받아들이면서 1인 3표 투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과반수조차 못 받은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회에서는 최소한 과반수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최종 투표를 하자는 안을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그 안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그래도 재단에서 시정하려고만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희망은 작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가 분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이런 독단적인 행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그만두고 상식적으로 학교 구성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의원 박철균 : 교수회도 말씀하셨으니까 직원회도 경과를 보고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 직원회는 대의원회가 학교와 의료원이 각 5명씩으로 총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모은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생긴 이래 최초로 총장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천명이 되고 명시가 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번에는 그것을 따르고 혹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차기 총장후보 추천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부분은 총장을 추천하고 새로운 총장을 빨리 선출하는 것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은 총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원과 양쪽으로 크게 조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 쪽에서는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60% 넘는 직원들이 비밀 무기명 투표에 참가하였습니다. 3명의 직원 추천을 받아서 3명중에 2명을 최종적으로 뽑고, 의료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직원들은 위에 설명한 방식대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직원회 중 60%인가요?

평의원 박철균 : 전 직원의 60%가 넘는 직원입니다. 직원회는 전 직원으로 자동 구

< 간서명 란 >

의 장 

성이 됩니다.

의장 박영무 :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보고 사항은 교과부 회계감사가 아니고 이름이 뭐였죠?

평의원 이재호 : 교과부 실태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네, 맞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었다는 것만 보고해주세요.

간사 김근태 : 기획처는 감사를 맡게 되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라서 현장부서, 경리팀으로 바로 갔습니다. 3일간을 진행 했습니다. 2010년 12.21(화)~23(목) 3간일을 했는데, 하루를 연장해서 총 4일을 실태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왔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사학진흥재단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왔는데 그 결과를 조만간에 보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 요청 건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총장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해서 오해받을 일이 있다고 자주 간접적으로 들립니다. 총장실에서 법인 카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살 필요 없이 밝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받을 필요 없이 이런 사용내역을 분명히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4번 사항은 말씀드렸고 5번 사항 말씀해주시죠.

간사 김근태 : 말씀 드린 대로 2월 초순이 설날이고 그 이후는 학사일정도 그렇고, 2월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1학년도 예산(안)을 1월 21일 이전에 가능하면 끝내고 1월 21일 평의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이 많이 유동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교과부 메시지도 있고 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등록금 심의 하는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1월 21일부터 1월말 이내에 예산자문 평의원회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자료 준비하고 하는 데 시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간사 김근태 : 의원원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제일 관건은 등록금 협의 하는 것이죠.

간사 김근태 : 그것 때문에 예산자문 평의원회 개최가 1월 21일 이전까지는 어려울

< 간서명 란 >

의 장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박영무 :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정 안되면 연기해야겠죠.

간사 김근태 : 규정에 정해져있는 대로 회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 이전에는 자료 배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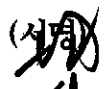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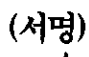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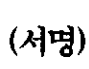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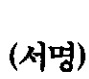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가능하면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도 늦어졌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1년 1월 7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박 정 응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운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